

#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8월 24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 권오규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각호에서 정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

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5.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일방 및 타방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1963

제16323호

관

부

2006. 8. 24. (목요일)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내국법인과 제2조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을 “각 호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1”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중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영업비용”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 각 호에 따른”으로, “동조제3호”를 “동조제4호”로, “동조제1호 또는 제2호”를 “동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③제4조제3호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을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

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제2호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 다른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제15조”를 “제15조·제15조의2”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제11조제8항 전단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을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18조를”로 한다.

제11조의2제6항 전단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을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18조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을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18조를”로 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에서 “무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다. 「의장법」에 따른 의장권  
 라.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마.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

②법 제6조의2제1항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함은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부담(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정상원가분담액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분담액 차입시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제외한다.

③정상원가분담액은 정상원가분담액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한다.

제14조의3(기대편익의 범위 및 산정방법) ①법 제6조의2제2항에서 “기대편익”이라 함은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말한다.

1. 원가의 절감
2.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 가. 매출액
  - 나. 영업이익
  - 다. 사용량·생산량 또는 판매량

②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의 공동개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제1항 각 호의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제14조의4(기대편익의 변경에 따른 참여자지분조정과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①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라 함은 당초 약정 체결시 예상한 총 기대편익 중 거주자의 기대편익이 무형자산의 개발 후 실현되는 기대편익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참여자인 거주자의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부담한 총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된 거주자의 지

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초과 부담한 원가등의 분담액은 그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한 후 제1항에 따른 변동이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④과세당국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없다.

제14조의5(중도참여자 또는 중도탈퇴자의 대가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과세당국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분담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자가 그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에 대한 대가나 탈퇴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대편익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경우 그 대가가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때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4조의6(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제출)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 ①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시유보처분통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산식

에 따라 산출한 환원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환원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제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비거

주자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4.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②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의 제출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요청”을 “요구”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동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6조의2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

14.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약정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

제22조제5항중 “제19조제1항제13호”를 “제19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26조중 “금융업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다른 금융업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른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중 “업종, 회사형태 또는 소득원천지별로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동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동 기구의 회원국이 조세피난처로 지정·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를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최근3사업연도”라 한다)의”로, “결손인 과세연도”를 “결손인 사업연도”로,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을

“최근3사업연도”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공제한 금액”을 “공제(제7호의 평가손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가산(제7호의 평가손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금액”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전의 제5호)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제2호에 의한”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 및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7.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손실
8.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②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증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가능유보소득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는 때에는 동 금액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계산) 법 제1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3사업연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를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제36조의5로 하고,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4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도매업에 대한 적용범위의 특례) 법 제18조제4항에서 “동일 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이하 “동일지역 등”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동일지역등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제36조의3(자회사 해당요건 등) ①법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특정외국법인과 동일지역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1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

②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90을 말한다.

제36조의4(경정청구) ①법 제1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지급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주배당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연도의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 동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다름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의5(종전의 제3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조에서 “이월익금등”이라 한다)으로 본다.”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동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은 다음 각호”를 “이월익금등은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이월익금등”으로 한다.

①특정의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동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7조제2항중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지역”을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으로, “내국인”을 “내국인(법 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9조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를“(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결과의 확대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호합의결과 확대적용신청서

2.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동일할 것을 말한다.

제47조제2항 전단중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야 한다.”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 및 제공내역 등을”을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 및 제공내역 등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제공내역통지서에 따라”로 한다.

제1조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외국환

거래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및 제6항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단서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41조의 산식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1조의2중 “국세징수법시행령”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중 “국세기본법”을 각각 “「국세기본법」”으로,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4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적용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피난처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부터 적용한다.

제9조(적용범위의 판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제10조(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실제 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5제1

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다양한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를 규율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과세지침(移轉價格課稅指針)을 국내 세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를 개선하고, 지나치게 과세 위주로 규정된 현행 조세피난방지세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56호, 2006. 5.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세피난처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요건을 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판정의 세부기준 조정(영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1) 거래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이거나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로 보던 것을,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타방 또는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세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나 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로 보도록 하고, 제3자와 일방 및 타방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일방과 타방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일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그 제3자가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도록 함.

(3) 프랜차이즈업의 경우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없는 데도, 거래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상원가분담액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마련(영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 신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기로 하고 비용·원가 및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원가분담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 및 참여자의 기대편익의 변경에 따른 지분조정 등 세부기준을 정

할 필요가 있음.

(2)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비용 및 위험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보도록 하고, 정상원가분담액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고 원가·비용 및 위험을 분담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당초 약정 체결시 예상한 총 기대편익 중 거주자의 기대편익이 무형자산의 개발 후 실현되는 기대편익과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그 변동된 내용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원가분담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과세투명성이 제고되고,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다.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정(영 제29조제3항

신설)

(1) 종전에는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국내 세법상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의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발생소득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음.

(2)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감하도록 하되,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감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도매업에 대한 조세피난방지세제 적용배제 요건 마련(영 제

36조의2 신설)

(1)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국가 또는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세피난

방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세피난처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국가 또는 동일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총 매입원가의 50 퍼센트 이상을 매입하여 동일국가 또는 동일지역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총 매출액의 50 퍼센트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우리나라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8 월24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규

●대통령령 제1965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본문을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전의 본문)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